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474

제출년월일 : 2008. 12.
제 출 자 : 달 성 군 수

1. 의결주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운영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한다.

2. 제정이유

○ 신규로 설치된 논공축구장(풋살장겸용)과 기존 군민체육관, 군민운동장, 테니스장 등 우리군이 설치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폐지 및 제정(부칙)

· 폐 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관 설치 및 사용 조례 폐지

· 제 정 :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정

○ 달성군 체육시설 5개소의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함(안 제3조)

○ 체육시설의 사용 시 허가신청 및 허가변경 사항, 이용(연습사용)에 따른 이용권 교부 등 허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개방, 각 시설별 상설스포츠 교실 운영, 주민이용계획 수립, 체육시설 점검 보수(안 제6조)

○ 시설의 개방·사용·입장의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제9조)

○ 전용사용료, 이용료, 부대시설 사용료 등 사용료 납부사항(안 제11조)

○ 체육진흥을 위한 행사, 불우청소년·장애인·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어린이·노인 등을 위한 행사, 등록된 체육동호인단체의 행사에 대한 사용료 감면(안 제14조)

○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상시 원상복구 및 배상, 사용자 주관 행사·경기로 인한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사용자의 민·형사상 책임(안 제17조)

○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 확보·배치(안 제23조)

○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음(안 제24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제144조(공공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 폐지 조례 : 달성군 체육관 설치 및 사용 조례

○ 입법예고 : 2008. 10. 29 ~ 11. 17 (20일간) - 의견있음

□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접수내용(별첨)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수정내용

□ 조례제정(안) 수정

당 초	변 경	비 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이라 함은 군민운동장, 군민체육관, 인조잔디축구장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이하 생략)	제2조(정의) ---------- ---------- 1.---------- ----------, 논공축구장 테니스장---------- ----------. (이하 생략)	명칭 변경 및 체육시설 추가
제3조(명칭 및 위치)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군민운동장은 달성군 논공읍 북리 1번지에 둔다. 2. 군민체육관은 달성군 현풍면 성하리 235-4번지에 둔다. 3. 인조잔디축구장은 달성군 논공읍 남리 717-10번지에 둔다.	제3조(명칭 및 위치) -------- ----------. 1. ---------- ----------. 2. ---------- ----------. 3. 논공축구장은 --------- ----------. 4. 화원테니스장은 달성군 화원읍 명곡리 34번지에 둔다. 5. 다사테니스장은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919-1번지에 둔다.	명칭 변경 및 체육시설위치 추가
제24조(체육시설의 위탁관리) ①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24조(체육시설의 위탁관리) ①---------- ---------- ---------- ----------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하 생략)	내용 추가
(신설)	제25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인 테니스장에 관하여는 위탁관리 권한을 소재지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권한 위임규정 추가

□ 별표 1 (전용사용료) 수정

○ 테니스장(화원, 다사) 2개소 사용료 추가

○ 풋살경기장(논공축구장) 사용료 추가

【별 표 1】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제11조 관련)

1. 군민체육관, 논공축구장, 군민운동장

(단위 : 원)

시설별	사용구분	기 준	체 육 경 기		체 육 경 기 외	
			평 일	공휴일 (토·일요일 포함)	평 일	공휴일 (토·일요일 포함)
군민체육관	실 내	주간(1일 4시간)	20,000	30,000	40,000	60,000
		야 간	30,000	45,000	60,000	90,000
논공축구장	인조잔디	주간(1일 2시간)	70,000	100,000	200,000	300,000
		야 간	100,000	150,000	300,000	450,000
군민운동장		주 · 야간	-	-	-	-

①사용기준 초과 시 1시간마다 전용사용료(주간)의 20%를 가산한다.

②조기 사용시는 해당시설 주간사용료의 50%를 감면한 금액을 징수한다.

③축구장의 1회 사용은 2시간으로 하며, 군외 거주자가 이용할 시는 전용사용료(주간)의 50%의 금액을 추가하여 징수하고, 주 2회 사용을 원칙(군민운동장은 제외)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④단체가 축구장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용사용료(주간)에 의한다.

⑤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된 가맹단체에 대하여는 전용사용료(주간)의 20%를 감면한 금액을 징수한다.

2. 테니스장(화원 · 다사)

(단위 : 원)

구 분		사용료	비 고
일일 회원		3,000	1인 1회 기준(2시간)
월 회 원		30,000	1인 1개월 기준
코트예약	주간(평일)	6,000	1면 1시간 기준
	주간(주말)	8,000	
	야간(평일)	12,000	
	야간(주말)	14,000	
지도강습(레슨)		120,000	1인 20분/일 1개월 기준(월~금)
단체	주 간	300,000	15명 1개월 기준(공휴일 제외, 1일 3시간) ※인원 초과시 1명당 20,000원
	야 간	120,000	주1회 1면 1개월(1일 3시간)

※월회원의 코트 사용은 공휴일을 포함한 월중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예약 행사는 우선 사용한다.

3. 풋살경기장(논공축구장)

(단위 : 원)

구 분	기본시간	평 일	공휴일
주 간	1시간	35,000	45,000
야 간	〃	45,000	55,000

『별첨』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제출

□ 의견제출자

○ 성 명 : 방 호 현

○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보성아파트 102동 303호

○ 연락처 : 010 - 8854 - 2158

□ 조례제정안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 : 조례제정은 찬성하나 제정안 일부내용 수정필요

○ 사 유

- 군비로 설치한 체육시설인 화원테니스장, 다사테니스장, 현풍 테니스장 등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새롭게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에 반드시 **테니스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달성군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에 반영한 후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절차에 의거 테니스장을 운영할 수탁자(개인·단체)를 선정 운영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

□ 기타 참고사항 등

○ 대구광역시 서구 테니스장설치·운영조례 제7조 테니스장 사용료 : 별첨

"별 첨"

테니스장 사용료

□ 일반기준

구 분		사용료(원)	기 준	비 고
일일회원	평 일	3,000	1인 1회	야간제외
	주말 · 공휴일	4,000		
월 회 원	주 간	30,000	1인 1월	
예 약	평일주간	7,000	1면1시간	
	평일야간	12,000		
	주 말	10,000		
지도강습(레슨비)		월120,000	1일 20분	월-금요일 레슨
단 체	주 간	월300,000	1면 15명	월/1일 3시간
	야 간	월120,000	1면주1회	

□ 개별기준

- ㅇ 월회원 구장 사용은 주말 공휴일 포함한 월중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예약 행사는 우선 사용한다.
- ㅇ 주간 단체 이용인원이 18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인당 20,000원을 추가 징수한다.
- ㅇ 야간 단체 구장 사용시간은 동절기(11~5월)에는 19:00~22:00까지 이며 하절기(6~10월)에는 19:30~22:30까지로 한다.
- ㅇ 6개월 이상 장기간 사용자가 사용료를 선납할 때에는 1개월의 사용료를 면제한다.
- ㅇ 예약(주말 · 공휴일 · 야간) 1면 3시간 이상 사용은 30,000원을 징수한다.
- ㅇ 장애인(제1급 내지 제3급은 보호자 1인 포함)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6조 해당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50% 할인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및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이라 함은 군민운동장, 군민체육관, 논공축구장, 테니스장 등 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기타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자"라 함은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전용사용료"라 함은 전용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라 함은 전용사용자가 주관하는 각종 경기 및 행사를 유료 관람하는 사람을,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사용자"라 함은 제4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단체입장"이라 함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이 인솔자에 의하여 10명이상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8. "기본액"이라 함은 별표 중 전용사용료 및 이용료를 말한다.
9.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10.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11. "군인"이라 함은 하사관 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전투경찰을 포함한다.
12. "어른"이라 함은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며, 이중 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대상으로 한다.
13. "체육행사"라 함은 체육경기 외에 체육활동으로 사회공익을 위한 경기 및 행사를 말한다. 이때의 "체육경기"라 함은 공인체육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경기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를 말한다.
14. "체육동호인조직(단체)"이라 함은 같은 체육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모임을 말한다.
15. "공휴일"이라 함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토요일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군민운동장은 달성군 논공읍 북리 1번지에 둔다.
2. 군민체육관은 달성군 현풍면 성하리 235-4번지에 둔다.
3. 논공축구장은 달성군 논공읍 남리 717-10번지에 둔다.
4. 화원테니스장은 달성군 화원읍 명곡리 34번지에 둔다.
5. 다사테니스장은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919-1번지에 둔다.

제4조(사용허가) ①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허가신청에 있어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용내역·관람권내역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개인이 이용(연습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연습)료를 납입하고 이용(연습)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된 것으로 본다.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

인(단체) 이상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개인연습·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공연·전람·전시 등 행사

제6조(시설의 개방) ①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스포츠 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년간, 월간, 주간, 일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상설스포츠 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배치하여야 하며, 활용상태를 수시 점검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개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보수
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또는 훼손될 것이 예상될 때

제8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인정된 사람
2. 술에 만취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5. 기타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제10조(사용시간) ①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구 분	하절기	동절기
조 기	05:00~08:00	06:00~09:00
주 간	08:00~19:00	09:00~18:00
야 간	19:00~23:00	18:00~23:0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그 경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연기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체육시설의 기능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일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①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사용료【별표 1】, 이용료【별표 2】, 부대시설사용료【별표 3】 등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신청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2인이상이 경합되어 계약에 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절차를 따른다.

④기타 부대시설 사용료는 시설사용의 종료후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관람권에 의한 사용료) ①전용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사용료 징수는 매출액 수입액의 100분의 20을 그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청장, 초대권의 매출액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본다. 다만, 관람수입금액의 금액이 전용사용료에 미달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초과사용료) 사용자가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도 1시간으로 본다.

1. 초과시간당 전용사용료 : 당해 주간사용료의 20퍼센트
2. 초과시간당 이용료 : 당해 기준이용료의 50퍼센트
3. 사용자가 주·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4조(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관람권에 의한 사용료를 포함한다)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3. 불우청소년,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어린이, 노인 등을 위한 각종 행사 및 경기
4.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의 행사
5. 상설 스포츠교실의 운영
6.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5조(사용료의 반환) ①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체육시설의 전용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1일전까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반환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경기 혹은 행사가 일시정지된 경우 정지된 시일만큼 경기 혹은 행사를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

②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에는 그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6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3.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4.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5. 장내 질서가 심히 문란할 때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7조(사용자의 책임) ①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9조(양도 등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전용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전 군수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20조(입장권) ①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기 및 행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는 입장권을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
2. 경기(행사)의 주최측 임원·지도요원·출전선수와 신문사·통신사 및 방송국의 체육관련 출입자
3. 각급학교 교내 체육대회 개최시의 해당학교 교사 및 학생
4. 전용 사용자측의 행사요원
5. 보호자가 있는 6세이하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자로서 주민등록증 등을 휴대한 사람
6.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제1항의 입장권의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제21조(매표 및 검인) ①관람권 등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시설에서 매표한다.
②모든 관람권·초대권(초대장)·홍보권·입원증·선수증 등은 사전에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체육지도자의 배치)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자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3조(체육시설의 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체육시설의 위탁관리) ①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군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육발전·선수육성·체육시설운영의 전문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수탁기관은 수탁체육시설의 사용허가·사용료 징수 등을 할 수 있으며, 체육발전과 선수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제25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체육시설인 테니스장에 관한 관리·운영 권한을 소재지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관 설치 및 사용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사용료의 부과·징수는 이 조례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별 표 1】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제11조 관련)

1. 군민체육관, 논공축구장, 군민운동장

(단위 : 원)

시설별	사용구분	기 준	체 육 경 기		체 육 경 기 외	
			평 일	공휴일 (토·일요일 포함)	평 일	공휴일 (토·일요일 포함)
군민체육관	실 내	주간(1일 4시간)	20,000	30,000	40,000	60,000
		야 간	30,000	45,000	60,000	90,000
논공축구장	인조잔디	주간(1일 2시간)	70,000	100,000	200,000	300,000
		야 간	100,000	150,000	300,000	450,000
군민운동장		주 · 야간	-	-	-	-

①사용기준 초과 시 1시간마다 전용사용료(주간)의 20%를 가산한다.
②조기 사용시는 해당시설 주간사용료의 50%를 감면한 금액을 징수한다.
③축구장의 1회 사용은 2시간으로 하며, 군외 거주자가 이용할 시는 전용사용료(주간)의 50%의 금액을 추가하여 징수하고, 주 2회 사용을 원칙(군민운동장은 제외)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④단체가 축구장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용사용료(주간)에 의한다.
⑤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된 가맹단체에 대하여는 전용사용료(주간)의 20%를 감면한 금액을 징수한다.

2. 테니스장(화원 · 다사)

(단위 : 원)

구 분		사용료	비 고
일일 회원		3,000	1인 1회 기준(2시간)
월 회 원		30,000	1인 1개월 기준
코트예약	주간(평일)	6,000	1면 1시간 기준
	주간(주말)	8,000	
	야간(평일)	12,000	
	야간(주말)	14,000	
지도강습(레슨)		120,000	1인 20분/일 1개월 기준(월~금)
단체	주 간	300,000	15명 1개월 기준(공휴일 제외, 1일 3시간) ※인원 초과시 1명당 20,000원
	야 간	120,000	주1회 1면 1개월(1일 3시간)

※월회원의 코트 사용은 공휴일을 포함한 월중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예약 행사는 우선 사용한다.

3. 풋살경기장(논공축구장)

(단위 : 원)

구 분	기본시간	평 일	공휴일
주 간	1시간	35,000	45,000
야 간	〃	45,000	55,000

【별 표 2】

체육시설 이용료(제11조 관련)

시설별	구 분	기 준	요 금	비 고
군 민 체육관	개인	1일 1회 (2시간당)	500원	1. 초과 1시간마다 1회 요금의 50% 가산 2. 단체는 동시에 이용하는 인원이 동일 소속 10인 이상인 경우를 말함 3. 어린이는 6세이상 12세이하인 자와 초등학생을 말함. 다만, 단체에 참여하는 4세이하의 어린이는 이용가능 (어린이 요금 적용) 4. 청소년은 13세이상 18세이하인 자와 중·고등학생을 말함 5. 군인은 하사이하의 군인·전투경찰·공익근무요원을 말함 6. 어른은 19세이상 64세이하인 자를 말하며(고등학생과 군인 제외), 노인은 65세이상인 자를 말함 7.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포함)와 그 유족 또는 가족·장애인(제1급 내지 제3급은 보호자 1인 포함하며 군민체육관에 한함)·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50% 할인(다만, 중복할인 불가)
	단체	1인 1회 (2시간당)	350원	

※ 할인대상자는 그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자에 한함.

【별 표 3】

체육시설의 부대시설 사용료(제11조 관련)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방송시설	확성기 (1조)1일	5,000	
	이동식앰프	20,000	

【별 표 4】

체육시설 입장료(제20조 관련)

기 준	요 금	비 고
어른 1인 1회	200원	1. 어린이는 초등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 소년은 13세이상 18세 이하의 중·고등 학생을 말함 2. 군인은 정복 착용자에 한함
어린이, 청소년, 군인	100원	